

공원구역내 광물채굴허가 사무처리규칙

건설부령 제158호(1975年 7月 5日)

(개정1981年 1月 6日)

제 1 조 (목적) 이 규칙은 자연공원법 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 23 조 및 제 50 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내에서의 광물채굴의 허가 및 광업권설정의 협의에 관한 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허가제한지역등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광물채굴은 허가하지 아니하며 광업권 설정에 관한 협의에 있어 동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제 4 호 내지 제 6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금, 석탄, 중석, 동, 철, 연, 아연등의 주요 전략광물을 채굴하는 것이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대한 영향을 가진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자연보호지역
2. 문화재, 기암괴석, 폭포 및 천연수립지역 기타 주요 경관지역
3. 공원시설 및 집단 시설계획지역
4. 공원 및 그 주변의 도로 공원계획상의 도로 등산로 또는 수로로 부터 관망상 노출이 현저한 지역
5. 절토, 굴착, 토석적재등으로 인하여 산사태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
6. 공해발생 기타 자연경관의 현저한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

제 3 조 (허가제한 광물) 별표에서 정하는 광물 이외의 광물에 대하여는 채굴허가를 하지 아니한다.

제 4 조 (점용 또는 사용제한) 공원구역안에서는 광물의 채련시설에 대한 점용 또는 사용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.

제 5 조 (조경사업의 실시) ① 공원관리청이 광물의

채굴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경 사업계획서와 사업평면도, 조감도, 사업비산출내역 및 설명서를 제출받아 조경 사업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.

1. 광업권의 표시
2. 채굴위치 및 방법
3. 조경사업의 기간
4. 조경사업의 규모, 공종, 사업량 및 사업비

② 공원관리청은 제 1 항의 조경사업비를 공원관리청이 지정한 금고에 미리 현금 또는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으로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조경사업비에 갈음할 금액이 예치되었을 때에는 그 금액상당액을 감면할 수 있다.

③ 공원관리청은 조경사업의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즉시 제 2 항의 예치금을 환급하여야 한다. 다만, 조경사업의 공정이 80% 이상 진척되었을 때에는 예치금의 50%를 환급할 수 있다.

④ 조경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기간내에 조경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원관리청이 대집행할 수 있다.

제 6 조 (허가절차등) ① 광물채굴허가를 신청하고 자할 때에는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또는 사용허가신청서에 광산평가조사서 (국립지질광물연구소, 대한광업진흥공사 기타 상공부장관이 인정하는 평가기관, 기술사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가 작성한 것으로서 매장량, 품위, 연간추정생산량, 가행년수등이 포함되어야 한다) 지질광상도, 광구도(6

천분의 1) 광업등기부등본 및 다음 사항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채광장소 및 채광법에 관한 사항
2. 항내수 및 폐석잔토의 처리에 관한 사항
3. 광석의 운반에 관한 사항
4. 선광장 및 선광법에 관한 사항
5. 지장목벌채, 광산건축물에 관한 사항

② 제 1 항의 신청을 받은 공원관리청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법 제 50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이 광업권설정에 관하여 공원관리청과 협의 하고자 할 때에는 공원법시행령 제 30 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에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한지역에의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제 7 조 (공원보호구역등에의 준용) 이 규칙은 공원보호구역 및 국토이용관리법 제 9 조제 1 항 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존지구 내에서의 광물채굴허가와 광업권설정형의에 관하여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.

별표

광종별	기 준
석 탄	연간 30,000 톤이상 생산규모로 10 년 이상 가동할 수 있는 광산
금	연간 50 kg 이상 생산규모로 5 년이상 가동할 수 있는 광산
중 석	연간 정광 30 톤 (woz 70 %) 이상 생산규모로 5 년이상 가행할 수 있는 광산
동	연간 정광 1,000 톤 (cu 6 %) 이상 생산규모로 5 년이상 가행할 수 있는 광산
철	연간 정광 3,000 톤 (Fe 56 %) 이상 생산규모로 5 년이상 가행할 수 있는 광산
연, 아연	연간 정광 2,000 톤 (Pbzn 각 50 %) 이상 생산규모로 5 년이상 가행할 수 있는 광산
석회석	연간 50,000 톤 이상 생산규모로 5 년이상 가행할 수 있는 광산
규 석	연간 정광 10,000 톤 (SiO ₂ 99.5 %) 이상 생산규모로 5 년이상 가행할 수 있는 광산
기 타	연간 정광 6,000 톤 이상 생산규모이거나 연간생산액 100,000,000 원 이상으로 5 년이상 가행할 수 있는 광산